

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[별표 2]

반납액의 산정기준표(제12조 관련)

구분	산정기준
1.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	소요경비× $\frac{1}{2}$
2.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	소요경비× $\frac{(\text{의무복무 개월수} - \text{근무 개월수})}{\text{의무복무 개월수}}$
3.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	소요경비 전액

※ 비고

1. 의무복무 개월수 및 근무 개월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.
2. 국외훈련을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3.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추가 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text{추가반납액} = \text{소요경비} \times \frac{1}{2} \times \frac{(\text{의무복무 개월수} - \text{근무 개월수})}{\text{의무복무 개월수}}$$